

다중이용시설과 배상책임보험

마석현 · 그린와재 기업보험부 화재특종팀장

1. 머리말

1999년 7월 초 필자는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화재가 난 ‘씨랜드’ 건물 윗부분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건물 내부는 화재로 인해 엇가락처럼 휘어진 처참한 형상을 드러내고 있어, 화재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 했다. 건물구조가 컨테이너를 개조한 조립식 가건물이고 내장재는 보온을 위해 스티로폼과 합판으로 마감한 재질이어서 불이 급속하게 번졌다. 또한 소화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도로 폭이 2~3m에 불과해 소방차가 제때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한다.

23명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그 허술했던 현장에서 필자의 가슴을 더 안타깝게 했던 일은 유사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 부적절함이었다. 당시 ‘씨랜드’는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에 대비하여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4억 5천만원,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의 총 4

억 7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배상책임손해를 위하여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이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씨랜드’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대형사고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탓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보험가입에 소극적이며, 보상한도액도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여부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필요성 및 적절한 보험가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다중이용시설과 사고사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게임장·노래연습장,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학원·목욕

장업, 영화상영관 및 기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소” 등을 말한다.

또한 최근 신규 업종이 다양화되면서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피씨방, 수면방, 콜라텍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다중시설의 범위확대 과정의 저변에는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많은 사고사례가 있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 사고대상이 공공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과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주요 사고사례

사고일	발생장소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사망	부상	
2003	2. 18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지하철 전동차	방 화	192	148	4,768,845
	3. 26 충남 천안시 성황동 천안초교 합숙소	주방냉장고 전기합선	9	16	16,400
	12. 17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대흥농산	용접불티	12	7	87,109
2002	1. 29 전북 군산시 개북동 대가유흥주점	카드 조취기 전선합선	15		17,650
2001	1. 10 경북 포항 세라프 할인매장	용접작업 부주의	4	48	804,300
	3. 4 서울 서대문 홍제동 주택	방 화	6	3	102,000
	3. 4 서울 강남 세곡동 율암마을 주거용 비닐하우스	원인 미상	10		11,000
	5. 16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원인미상의 불씨	10	23	4,000
2000	9. 19 전북 군산시 대명동 윤락업소	원인미상	5		7,465
	10. 18 경기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전기합선	7		20,000
	11. 11 서울 광진구 김경빈신경외과의원	원인미상	8	25	12,600
1999	6. 30 경기 화성시 씨랜드청소년수련원	모기향불	23	7	72,000
	10. 30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불장난	56	81	64,813

자료 : 행정발간등록번호(11-1310000-000193-10),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행정자치부 소방국)

3. 다중이용시설과 의무보험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공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특수건물’로 규정하고, 이들 건물 소유자에게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화재(주택은 폭발, 파열 포함), 풍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에 의한 재산손해에 추가하여 화재(주택은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인명피해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의무적으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사망·후유장해는 최고 8천만원, 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을 한도로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의 한도액은 1인당 보상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질적으로 책임보험계약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하며(상법 제719조), 의

〈표 2〉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관련법규 및 조문	영위업종	의무가입기준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건물	연 면 적 1,000㎡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원	바닥면적 2,000㎡ 이상
의료법 제3조 제2항	종합병원 또는 병원	연 면 적 3,000㎡ 이상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숙박업	연 면 적 3,000㎡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숙박업	바닥면적 3,000㎡ 이상
공연법 제2조 제4호	공연장	연 면 적 3,000㎡ 이상
방송법 제2조 제2호	방송사업	연 면 적 3,00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연 면 적 3,000㎡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내지 라목	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희주점영업	바닥면적 2,000㎡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연 면 적 3,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아파트	16층 이상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	공장	연 면 적 3,000㎡ 이상
기타	건물	11층 이상

자료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무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시킨 의무배상책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자위수단(自衛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은 평상시 기업경영의 일부비용으로 대형 배상책임사고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영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기업의 배상능력이 없다면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시설 및 업무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충분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행수단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 의무배상책임보험이다.

따라서 의무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비례하여 점차

〈표 3〉 주요 의무배상책임보험의 종류

보험종목	관련법규	담보위험	법령상 보상한도
화재보험의 특수건물 신체배상책임보험특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특수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사상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사망 : 1인당 8,000만원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1급)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사업자, 용기 등 제조업자 및 가스사용자가 가스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사망 : 1인당 6,000만원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후유장해 : 1인당 6,000만원(1급)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법령상 보상한도액은 없음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 탑승객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사망 : 1인당 8,000만원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1급)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법령상 보상한도액은 없음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객의 신체에 장애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사망 : 1인당 8,000만원 부상 : 1인당 1,500만원(1급) 후유장해 : 1인당 8,000만원(1급)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입힌 손해	- 1인당 1억원 이상 - 총 보상한도액 2억원 이상

손해보험업계는 다중이용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율을 확대, 적정보상이 가능한 수준의 상품을 보완·홍보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은 각종 의무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행 법률에 따른 주요 의무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의무보험 가입을 규정하는 있는 각종 법률의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표 3>과 같은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률상 한도액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능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은 배상의 무 이행능력이 취약한 시설에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에서는 오히려 배상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규모 시설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고, 배상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시설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의 의무가입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행정관청 및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모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고려사항

화재보험과 같은 재물보험은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물을 사고발생의 객체로서 보험의 목적으로 정하는 반

면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생명을 사고발생의 객체로 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재물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시가 또는 재조달가액 등의 보상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미래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부담할 수 있는 배상책임 손해액의 크기를 정확히 예측·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유형과 피해 규모는 사고나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보상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의무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이러한 의무보

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만일의 사고 발생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손해 또는 손해보상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민법상 과실책임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상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련의 화재사고는 대형의 인명피해로 인하여 매년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화재참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겪었던 일련의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준비, 시행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손실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기저에는 안전의식의 부재, 방재시설의 미비, 안전검사 등의 소홀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적절한 보상의 미흡에 따른 문제점 또한 등한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의무보험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대상 시설이 한정적이어서 중소형 다중이용시설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비해 보상한도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보



험가입율을 확대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한도액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보완·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법률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가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유형별 최대예상피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한도액 수준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고발생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과 동시에 보험회사들로부터 배상책임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및 위험관리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형사고의 사전예방과 함께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